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95815(본소), 2020가단86411(반소) 판결
[채무이행청구의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태, 황수정

변론 종결 2020. 10. 28.

판결 선고 2020. 11.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43,841,221원, 피고(반소원고) C은 29,617,0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청구원인에 비추어 오기로

본다).

반소: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 B에게 12,768,690원, 피고 C에게 14,696,04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들과 D은 망 E(2008. 7. 11. 사망, 이하 '망인')의 자녀이고, F은 피고 B의 배우자, G은 피고 B의 자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D을 상대로 2012년경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6브23)에서 법원은 2018. 8. 27. 공동상속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와 D이 각 3514/10000와 6586/10000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등의 상속재산분할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분할결정은 피고들이 제기한 재항고심(2018스66)에서 대법원이 2019. 3. 7.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다.

1) 피고 B에 대한 합계 284,227,224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① 망인의 H은행에 대한 400,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이하 'H은행 예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 H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이자 1,621,506원 상당, ㉡ H은행 예금반환채권으로 I의 채무가 대위변제된 후 취득한 구상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I로부터 지급받은 117,151,163원 상당, ㉢ H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일부가 공탁된 후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을 피고 B가 출급하였는바, 위 강제집행으로 소멸한 피고 B의 판결금 채무 소멸 이익 및 피고 B가 출급한 공탁금 합계 75,454,555원 상당 등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② 망인의 J은행에 대한 210,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이하 'J은행 예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임의로 인출한 9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 피고 C에 대한 합계 175,454,55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① H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일부가 공탁된 후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을 피고 C이 출급하였는바, 위 강제집행으로 소멸한 피고 C의 판결금 채무 소멸 이익 및 피고 C이 출급한 공탁금 합계 75,454,55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② J은행 예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임의로 인출한 1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다. 원고는 2011년경 피고들과 F, G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 중 원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9530,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 이 사건 종전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44725)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B는 J은행 예금반환채권 관련 110,000,000원, H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이자 1,621,506원과 구상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112,523,517원 합계 224,145,023원 중 원고 상속분 1/4에 해당하는 56,036,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J은행 예금반환채권 관련 100,000,000원 중 원고 상속분 1/4에 해당하는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종전 판결은 2016. 5. 1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 B의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1. 24.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판결금 원금 56,036,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8,290,391원 합계 114,326,646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C로부터 2017. 2. 20. 판결금 원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2,037,670원 합계 47,037,6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결정에 따라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를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상속받은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로, 피고 B는 99,877,446원(= 284,227,224원 × 3514/10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C은 61,654,728원(= 175,454,550원 × 3514/1000)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또는 임의변제 등으로 피고 B로부터 변제받은 56,036,225원, 피고 C로부터 변제받은 32,037,714원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각 원금에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피고 B는 43,841,221원(= 99,877,446원 - 56,036,225원), 피고 C는 29,617,014원(= 61,654,728원 - 32,037,714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분할결정에서 정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고, 피고 C도 7,579,34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분할결정에 따라 상속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액수는 반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 자체를 평가한 것이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채권이다.

피고들이 지급한 금액은 각 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부당이득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부당이득금 자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종전 판결은 망인의 H은행과 J은행에 대한 각 예금반환채권을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았다는 전제에서, 그중 원고의 상속분 1/4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거나 변제받은 금액은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 이 사건 분할결정은 망인의 H은행과 J은행에 대한 각 예금반환채권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3514/10000를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초하여 변제받은 부분 중 원금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부분과 일부 겹치지만(원고는 이 부분을 스스로 공제하고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금액 상당이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분할결정에 따라 추가로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받기 전이므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위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원고에게, 피고 B는 43,841,221원, 피고 C은 29,617,0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할결정으로 원고가 추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그만큼 피고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원고는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몫보다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한 상속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세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 2항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부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참조).

다.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반소 가) 피고 B가 원고와 D를 상대로 초과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5656, 이하 '이 사건 선행 구상금 소송') 소송계속 중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는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세를 납부한 후 공동면책한 연대채무자로서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과 소송물이 같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선행 구상금 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결정'과 관련된 상속세 변동 부분은 제외하고, 이 사건 분할결정이 있기 이전에 확정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련 예금반환청구 사건과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각 판결에 따른 상속분 변동에 따른 상속세에 관해서만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선행 구상금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된 중복 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① 피고 B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행 구상금 소송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만으로 일부 청구가 명시되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②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구상권은 원고와 피고 B가 각각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 원고와 피고 B의 상속세 분담비율 등을 요건사실로 한다. 특히 원고와 피고 B의 상속세 분담비율 즉 망인의 재산 상속 비율은 구상금 소송의 변론종결일 당시 하나의 사실로 증명될 부분이지 이 사건 분할결정에 따른 변경 부분을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다.

③ 관련 예금반환청구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이 사건 분할결정 등은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분담비율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의 근거에 해당할 뿐 그 주장 여부에 따라 상속세 구상금 청구라는 소송물이 양적으로 분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선행 구상금 소송이 일부 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이

잔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 부담비율 부분이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피고 B 부담비율 부분보다 더 많다고 보기 어렵거나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C의 반소 원고는 피고 C의 반소가 본소와 소송물이 같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망인으로 상속받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 C의 반소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결정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상속세 부담부분 변경에 따른 구상금을 행사하는 것으로,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상속세 구상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전 상속세 부과 기초가 된 상속재산에 변경이 있었다는 점 이외에, 피고 C가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의 부담비율 부분이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피고 C의 부담비율 부분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C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 뿐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② 피고 B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부담비율에 관하여, 원고는 18.91%, 피고 B는 24.13%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C의 주장하는 상속세 부담비율에 따를 경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을 8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상속세로 356,714,100원, 피고 B는 217,817,0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가 주장하는 상속세 부담비율에 따르면, 원고가 납부한 356,714,100원 중 피고 B 부담비율 24.13%에 해당하는 금액은 86,075,112원(= 356,714,100원 × 24.13%)이고, 1) 피고 B가 납부한 217,817,010원 중 원고 부담비율 18.91%에 해당하는 금액은 41,189,197원(= 217,817,010원 × 18.91%)이다. 2) 피고 B가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 부담비율 부분이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피고 B 부담비율 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B는 자신의 분담비율 16.99%, 배우자인 F의 분담비율 7.22%, 자녀인 G의 분담비율 9.36% 합계 33.57%가 자신의 분담비율이라고 주장한다.3) 을 8호증에 따르면 피고 B와 G은 상속세 등으로 500,596,9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중 원고의 분담비율 18.91%에 해당하는 금액은 94,662,887원(= 500,596,970원 × 18.91%)이다.4)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피고 B의 분담비율 33.57%에 해당하는 금액은 119,748,923원(= 356,714,100원 × 33.57%)이므로,5) 피고 B가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 분담비율 부분이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피고 B 분담비율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선행 구상금 소송의 피고 B 준비서면 등(을 10호증)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피고들이 일정 기간 이전에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는 모두 마쳤으므로 이후 부과되는 가산금 등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 상속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분담비율은 내부적인 비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세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해서 연대채무자 전체가 부담하는 지체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자신이 부담하는 상속세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비율적으로 충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부가 지체됨으로 인한 가산금 등은 공동상속인 전부가 책임진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타당하여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기각하며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강민호

1) 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피고 C의 분담비율 24.29%에 따를 경우에는 86,645,854원이다(= 356,714,100원 × 24.29%).

2) 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주장한 원고의 분담비율 19.06%에 따를 경우에는 41,515,922원이다(=

217,817,010원 × 19.06%).

3) 가족이라는 점만으로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분담비율을 모두 더하고 이를 전제로 구상권 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한다.

4) 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원고의 분담비율 19.06%에 따른 경우에는 95,413,782원이다(= 500,596,970원 × 19.06%).

5) 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주장한 피고 B의 분담비율 33.1%(= 16.52% + 9.36% + 7.22%)에 따른 경우에는 118,072,367원이다(= 356,714,100원 × 33.1%).